

전주지방법원 2015. 11. 3 선고 2015가단2357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10. 13.

판결 선고 2015. 11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김제시 C 대 698㎡ 중 별지 2.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143.5㎡에 있는 건물(목조 및 조적조 기와 및 판넬 지붕 단층 주택) 143.5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14. 11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1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노태선

별지